

=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24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4. 26
 다. 상 정 일 자 :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07.5.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양종호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 공무원 내부신고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패에 대한 온정주의 청산과
공무원 내부조직에 상존하는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립으로 소속직원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적용대상을 사하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안 제2조)
-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요건을 정함(안 제2조)
- 부조리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징계시효 만료일
- 3개월 이전까지로 함(안 제3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5조)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7조)

3. 관계법령

- 부패방지법 제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조례안은

우리구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내부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나. 적법성과 타당성 측면에서는

2001.7.24 제정된 부패방지법 제3조에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하여 법적, 제도적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 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직원의 부패척결 의식 고취에 적극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응하고 있음

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소의 예산이 소요되나
부조리 척결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때 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금액도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 기 시행기관 관련예산(2007년)

기관별	부산시	남구	기장군
금 액	3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